

의안번호	2219869
의 퇴 인	김정재의원
회 답 일	2026.8.13.
추계번호	26D344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선거관리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경우 증원인력 9명에 대한 인건비, 사업비 등에 소요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13억 600만원, 2028년 12억 9,7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향후 5년간 총 67억 2,400만원(연평균 13억 4,5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선거관리감독위원회 신설(안 제37조제1항 및 안 제37조의2)	1,306	1,297	1,335	1,373	1,414	6,724	1,34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7조제1항 (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선거관리감독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신설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에 관한 사항을 소관함	의무규정
2	안 제37조의2 (선거관리감독위원회에 대한 특례)	선거관리감독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주요 사업 및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투표용지·투표함 등 선거관리 물품의 작성·보관·송부·회수 체계에 관한 사항, 「공직선거법」 제151조의4제1항의 선거관리 중대사고 및 재발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감사원의 선거관리 사후감사 결과 보고서에 관한 사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체감사 결과보고서에 관한 사항, 사전투표, 투표관리, 개표관리 등 선거관리 절차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조직·인사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사함(제1항) 선거관리감독위원회는 진행 중인 개별 선거의 투표·개표 사무에 관한 사항, 개별 투표소 또는 개표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개별 선거의 당선인 결정 또는 선거 결과 확정에 관한 사항, 「공직선거법」 제219조에 따른 선거소청, 제222조에 따른 선거소송 및 제223조에 따른 당선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의 심리·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이해관계에 직접 관련된 개별 사건에 관한 사항에 관여할 수 없음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37조제1항 (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	-
2	안 제37조의2 (선거관리감독위원회에 대한 특례)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추계에서는 선거관리감독위원회를 신설할 경우, 소관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공무원의 증원에 따른 인건비, 기본경비 등 추가재정소요를 추계
- 선거관리감독위원회 신설에 따른 증원인력은 위원회의 사무와 성격을 고려하여 겸임위원회인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의 인력 규모를 고려하여 추정함¹⁾
 - 개정안은 국회 선거관리감독위원회를 겸임 상임위원회로 신설하여 소관사항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주요 사업 및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투표용지·투표함 등 선거관리 물품의 작성·보관·송부·회수 체계에 관한 사항, 「공직선거법」 제151조의4제1항의 선거관리 중대사고 및 재발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감사원의 선거관리 사후감사 결과보고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행정안전위원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안건 검토를 위한 선거정책조사관 2명(5급 1명, 6급 1명)이 배치되어 있음
 - 개정안에 따라 선거관리감독위원회 신설 시, 행정안전위원회에 소속되어

1) 국회의원 수는 「공직선거법」 개정 사항으로, 본 추계에서는 국회의원 수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함

있는 선거정책조사관 2명을 인력재배치하는 것으로 가정함

- 선거관리감독위원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공간은 기존 국회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에서 제외
- 개정안 부칙에서 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2027년부터 2031년까지의 기간을 추계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선거관리감독위원회 구성

- 추계에서는 선거관리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데 따른 증원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 및 사업비를 추계함
- 현재 상임위원회 중 겸임위원회는 국회운영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정보위원회로, 정원이 각각 13명, 11명, 9명 규모라는 점을 고려하여, 선거관리감독위원회 지원 공무원 인력규모는 3개 위원회의 평균인 11명으로 가정함

[표 2] 국회운영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및 정보위원회 소관 의안 접수건수 및 정원 현황
(단위: 명, 건)

	국회운영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정보위원회
정원	13	11	9
제21대 국회 의안 접수건수	480	447	33
제22대 국회 의안 접수건수 (2024.5.30.~2026.8.10.)	506	233	24

자료: 「국회사무처 직제 시행규칙」(2025.12.31) 및 의안정보시스템

-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재배치되는 2명(5급 1명, 6급 1명)을 제외한 증원인력 9명에 대한 직급별 배분은 「국회사무처 직제 시행규칙」의 성평등가족위원회의 직급별 구성을 고려하여 아래 표와 같이 가정함

[표 3] 선거관리감독위원회 신설에 따른 증원인력의 직급별 구성 추정

(단위: 명)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3~4급	4~5급	6급	7급	8급	9급	합계
선거관리감독위원회	1	1	1	2	0	1	1	2	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인건비 등) 9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등은 공무원 보수, 기관부담금, 기본경비, 자산취득비임

- 공무원 보수는 국회의 2026년 세입세출예산 각목명세서를 참고하여, 최근 3년(2024~2026)간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3.0%를 적용함

[표 4] 인건비 단가(2026)

(단위: 백만원)

	수석전문위원	2급(전문위원)	3급	4급	5급	7급	8급	9급
인건비 단가	164	152	131	109	86	63	52	49

주: 5급 이상은 기본연봉, 입법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연가보상비를 포함하였으며 6급 이하는 봉급, 입법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연가보상비, 성과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명절수당을 포함하였음

자료: 「2026년 세입세출예산 각목명세서: 국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기관부담금(공무원연금,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공무원 보수에 공무원 신규 채용 관련 기관부담요율²⁾을 적용하여 산출함
- 기본경비는 국회 인건비 대비 기본경비 비율(8.2%)을 고려하여 산출함
- 자산취득비는 2027년 일회 발생하는 것을 가정하여 증원인력 9명에 국회 예산정책처가 전망(2026년 3월)한 정부기관 1인당 자산취득비 단가³⁾를 곱하여 산출함

2) 공무원 신규 채용 관련 기관부담 요율(2026. 3.)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기관부담률(%)	13.129	13.193	13.285	13.379	13.475

3) 2027년 정부기관 1인당 자산취득비는 5,078,000원임

[표 5] 증원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보수	881	908	935	963	992	4,678
기관부담금	116	120	124	129	134	622
기본경비	72	74	77	79	81	384
자산취득비	46	0	0	0	0	46
합계	1,115	1,102	1,136	1,171	1,207	5,72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선거관리감독위원회의 사업비 추계액은 2026년 국회운영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정보위원회 운영경비 예산을 참조

- 사업비는 2026년 국회운영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정보위원회의 평균 운영경비 예산 1억 8,700만원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추계

[표 6] 선거관리감독위원회 사업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사업비	191	195	199	203	207	99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라 선거관리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경우 인건비, 사업비 등에 소요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총 67억 2,400만원으로 추계됨

[표 7] 선거관리감독위원회 신설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인건비 등	1,115	1,102	1,136	1,171	1,207	5,729	1,146
사업비	191	195	199	203	207	995	199
합계	1,306	1,297	1,335	1,373	1,414	6,724	1,34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추계결과

- 선거관리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경우 증원인력 9명에 대한 인건비, 사업비 등에 소요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13억 600만원, 2028년 12억 9,7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향후 5년간 총 67억 2,400만원으로 추계됨

[표 8]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선거관리감독위원회 신설	1,306	1,297	1,335	1,373	1,414	6,72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 결과는 선거관리감독위원회의 사무와 성격을 고려하여 겸임위원회인 국회운영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정보위원회의 직제와 사업비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 실제 증원인력 및 사업비, 인력 재배치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전수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전수연	02-6788-4667	syjeon@assembly.go.kr